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38
----------	-----------

제안연월일 : 2019년 4월 24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학교”와 “학생”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고, 각 개별법령에서 정의하는 연령기준이 다른 “아동”과 “청소년”을 “학생”으로 수정함.
- 용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 “학교”와 “학생”에 대한 정의를 수정함 (안 제2조).
- “아동”과 “청소년”을 “학생”으로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함 (안 제4조, 제5조, 제11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의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를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를 “제1호의 학교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로 한다.

안 제4조의 조명 “(서울시교육감 등의 책무)”를 “(교육감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위학교”를 “각급 학교”로 한다.

안 제5조의 조명 “(서울특별시 학교비만관리종합대책의 수립 등)”을 “(학생 비만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학교비만관리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아동·청소년”을 “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아동”을 “학생”으로 한다.

안 제11조의 조명 “(포상)”을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조명 외의 부분 중 “포상”을 “표창”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p> <p>2.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p> <p>3.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p> <p>4. ~ 6. (생략)</p> <p>제4조(서울시교육감 등의 책무) ① (생략)</p> <p>② 교육감은 단위학교의 비만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5조(서울특별시 학교비만관리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해 서울특별시 학교비만관리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1. ~ 5. (생략)</p> <p>6.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생활습관 개선</p> <p>7.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비만 예방교육</p> <p>8. ~ 10. (생략)</p>	<p>제2조(정의).....</p> <p>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p> <p><삭 제></p> <p>2..... 제1호의 학교에.....</p> <p>3. ~ 5. (원안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원안과 같음)</p> <p>②.....각급 학교.....</p> <p>③ ~ ④ (원안과 같음)</p> <p>제5조(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p> <p>② (원안과 같음)</p> <p>1. ~ 5. (원안과 같음)</p> <p>6. 학생.....</p> <p>7..... 학생.....</p> <p>8. ~ 10. (원안과 같음)</p>

③ (생 략)

제11조(포상)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원안과 같음)

제11조(표창).....
.....
.....
.....
.....표창.....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교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 및 비만판정 학생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비만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만 예방교육의 기본방향
- 2.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사 연수
- 3. 비만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4. 교사·부모·가족 등 학생 비만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지그룹 구성
- 5.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학부모 대상 홍보
- 6. 학생 대상 건강생활습관 개선
- 7.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비만 예방교육
- 8. 학생 건강 관련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 9.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 10. 비만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방안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비만 예방교육의 효과적 시

행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프로그램 개발)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만도 통계 조사 및 활용)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학생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성별, 학년별, 학교급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각급 학교, 담당교사,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